

제 529 호

1975.1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국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994 호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조례 3
- 제 995 호 : 서울특별시 등·반설치 조례 5

◎ 고 시

- 제 180 호 : 도시계획시설 (전기 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6
- 제 18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7
- 제 18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일부 변경승인 7
- 제 18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8

◎ 공 고

- 제 263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에 정지지점 공고 9
- 제 264 호 : 환지계획일부 변경 공람 공고 10
- 제 265 호 : 환과차확변경 공람 공고 10
- 제 267 호 :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환지계획일부 변경 공람 공고 11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68 호 :	한도북점 가구점비 지구건축계획확 정 공고	11
제 219 호 (송로구공고) :	공인패인공고	11
제 4 호 (강남구공고) :	공인신 조공고	15
제 21 호 (양서출장소공고) :	공인개작공고	15
◎ 예 규		
제 312 호 :	급수공사설 계및 사무취 급요령중 개정규정	16
◎ 사 령		19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새과세면제조례들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94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새과세면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시민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과 시민주택의 건축주및입주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1구당 30명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집단주택의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단 15명이하의 주택은 다음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집단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시민주택"이라 함은 분양을 조건으로 건립하는 1구당 15명 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의 주거용건물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3. "건축주"라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영업세법 제15조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건축)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과세면제대상) ①주택을 건립하는 건축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시민주택을 건립하는 건축주와 최초입주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면허세(건축허가시)와 건물준공후 최초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2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 4 조 (면제 제외) 건조의 건축주에 대한 과세면제규정중 토지의 취득세와 건축물이 준공후 1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조 (사무처리의 위임) 건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사부는 당해과세석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한다.

제 6 조 (면제신청) ①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동조례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1. 제 3 조 1 항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2.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은 197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되 1977년 12월 31일까지 준공점사를 필한 서민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조례제 906 호 서울특별시아파트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4년 11월 1일 이후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기존아파트및 서울특별시아파트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면제받은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면제된 것으로 본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별시 통·반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95 호

서울특별시 통·반설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한 발달집투와 주민의 자조노력이 의한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통·반의 조직) (1) 통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2) 1 통은 4 개 반 내지 6 개 반으로 구성한다. (3) 반은 20 가구 내지 40 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 3 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통장이 정한다.

제 4 조 (통·반장의 위촉) (1)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2) 통·반장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은 통장의 추천이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반장은 통장이 위촉한다.

1. 당해 통·반장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 세 이상 50 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2. 전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능력이 있는 남자 다만 반장의 경우에는 활동력이 있는 여자도 위촉할 수 있다.

(3) 구청장 및 동장은 통·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한다.

제 5 조 (임무) (1)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주민지도 및 거주파악
2. 지역방위수도
3. 새마을사업선도
4. 기타 동장 지도감독 사항

(2)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 구교시에는 통·반장의 가족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 ①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수부로 구성되는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 또는 통·반장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실비수당등)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시행세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조례제 22호(1962.1.16) 서울특별시 재건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의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80 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대통령령제 7753 호(75.8.2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11.4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전기공급설비 (발전소)	영등포구 온수동 산17와1의 5필지	12,833㎡			
<p>※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81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p> <p>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위임 사항에</p>		<p>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75. 11. 4.</p> <p>서울특별시청</p>				
<p>가. 지하도로(지하상가)결정조서</p>						
구분	시설명	위치	독원	연장	면적	비고
신설	지하보도 (지하상가)	퇴계로-충무로 1가입구	32.5㎡	48㎡	1,560㎡	
<p>※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82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일부 변경 승인</p> <p>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및 일반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p>		<p>및 지적일부 변경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가. 지하도로 결정조서</p>		<p>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1. 4 서울특별시장</p>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	연장	비고			
신설	대방지하차도	관악구 대방동	16 ~ 19.3m	250 m				
<p>나. 지적일부변경조서</p>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가점	종점	비고
기성연경	대로	3		25 m	950 m	대방동 477	대방동 446	구획정리확보된 도로 지적일부변경
<p>◎ 서울특별시고시제 18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p>				<p>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1. 4. 서울특별시장</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163 호 (75.10.15) 로 시설결성 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1. 사업시행지: 경기도 시흥군서면 광명리 산 5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학교시설 사업(광명공업전수학교) 3. 면적 및 규모: 14,837 평 4. 시행자주소 및 설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 가 3 의 236 호 강 순형</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75.11.</p>				

나. 준공예정일: 76.5.20

6. 위치 및 계획도면: 별첨
(도면생략)

7. 공사설제도면: 별첨(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 시
흥군 광명리 출장소에 보관함.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63 호

토지구획성리사업지구 환지에성지(지성)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추가, 김포
구획성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
별시 공고 제 232 호(75.10.7)로
공람 공고한 바 있는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에성지 지성을 별첨조
서 및 도면과 같이 지성하였기
토지구획성리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6 조와 해당지구 토지구획
성리사업시행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에성지가 변경 지정된 토지의

사용 수익은 공고일로부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
한다. 다만, 성지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
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성지
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성지공사 미완료
및 다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
부터 사용 수익을 하게 한다.

3. 환지에성지 지정서 및 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
과와 관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
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환지에성지 지정서 및

도면: 조서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및 관세구청 시민봉사
실에 각각 비치)

1975. 11. 3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264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시흥, 김포, 신림수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 55조, 제 3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 제 1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공고합니다.
2. 환지계획 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성비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5. 11. 4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명: 시흥, 김포, 신림수가 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시흥동, 염창동 일부지역
3. 필지수: 37 필
4. 변경조서 및 도면: 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성비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 서울특별시 공고제 265 호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1. 당시가 시행중에 있는 영등(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성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제 55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고제 267 호

토지구획정리지구내원지계획
일부 변경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망우수가, 정인빛 역은
수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일부 토지
에 대한 원지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55 조와 동법제 33 조 규정에 의
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에
공합니다.
2. 원지계획 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는 별
도 송달할것이나 미수명되는 토지소
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용한다.

1975.11.7.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268 호

반도북정가구명비지구
건축계획확정공고

1. 당시 반도북정가구 명비지구 (공구

율지로 1. 2 가 및 소공동일부) 의
건축계획을 건축법 제 33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관계
도서와 같이 확정하였기 이에 공
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건축지도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생략.

1975.11.6.

서울특별시장

○ 종로구 공고제 219 호

공인제인공고

1.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9 조에 의
거 별첨과 같이 제인하였기 이에
공고함.
2. 대상동: 옥인동, 복부동, 신문도
동, 낙원동, 견농동, 명전동, 안국동
제동, 종로 5 가동, 종로 6 가동, 경골
2. 4 가동
3. 공인의 제인당시연령: 별첨.

1975.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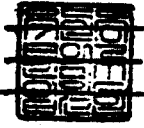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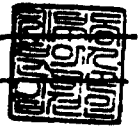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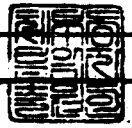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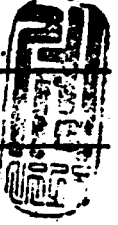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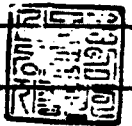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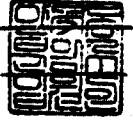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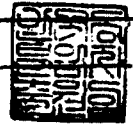
종로구청장 인

21-12 제 529 호

시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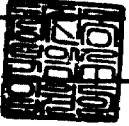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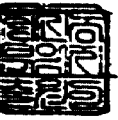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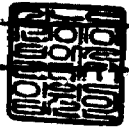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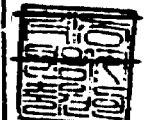
1975. 11. 6

동 별	직 인	계 인	분임수업원인	분임지속원인
옥 인 동				
제 부 동				
신운문동				
안 국 동				

제 529호













시 보

1975. 11. 6 21-43

동 별	직 인	계 인	본검수검자인	본검지출자인
청진동				
천공동				
동천동				
서도동				

28-14 제529호

1975. 11. 6

종 분	직 인	계 인	본업 사승장	부업 수첩장인
종로 5가동				
종로 6가동				
명준 2, 4가동				

○ 강남구청 공고제 4 호

공인 신조 공고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분임 세입징수관 및 분임채권관리관공인을 신조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75. 11.

강남구청장 국 용 호

1. 공인명칭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임 세입징수관인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임 채권관리관인



서울특별시강남구분임세입징수관인



서울특별시강남구분임채권관리관인

○ 양서출장소 공고제 21 호

공인계각공고

당 출장소 관내 방화동장의 직인

및 제인이 마멸되어 폐기하고 재차 사용토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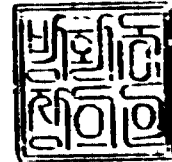
1975. 11. 4.

양 서 출 장 소 장

- 1. 공인명 : 방화동장의 직인및직인
- 2. 사용일시 : 75.11.5. 09:00
- 3. 공인인명 :

폐 기 인 영

계 각 인 영



예 규

급수공사실계 및 사무위급요령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강구자순인

◎ 서울특별시예규 제 312 호

급수공사설계및사무
취급요령중개정규정

급수공사 설계 및 사무취급 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총칙 라.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
공은 구청장 또는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2) 배수관 구경 $D = 300\text{mm}$ 이상이거나,
배수관 부설 총연장이 500 m
이상의 급수공사를 구청장 (이하
같다) 이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파트는 $D = 50\text{mm}$ 이상,
주택단지는 $D = 75\text{mm}$ 이상으로
한다.

2. 시공업자의 설계 및 시공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의계약 대상 급수 공사의 설
계 및 시공절차

가. 신청서의 접수

(1) 급수공사 신청서 (운영규칙
서식 제 10 호) 는 구청 시민
회에서 접수한다.

(2) 접수담당자는 첨부 서류를
확인한후 접수부 (별지서식제 1호

에 기재함과 동시에 접수증
(별지서식제 2 호) 을 발부하고
즉시 수도 2 파트 이송한다.

나. 승인 및 공납금 납부

(1) 수도 2 과장은 신청서가 이송
되면 급수공사 처리부 (별지서
식제 3 호) 에 기재하고 담당자
를 지명, 현장을 조사하게 한다.

(2) 담당자는 신청서에 의하여
현지를 조사한후 복명서 (별지
서식제 4 호) 및 지적도에 설계
도 (기준액 산출포함) 를 작성
하여 소정의 결재를 얻은후
승인분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
납입통지서 (서식제 8 호) 를, 승
인 불가분에 대하여는 취소통
지서 (서식제 6 호) 를, 보류 (보
완) 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류 (보완) 통지서 (별지서식
제 6 호) 를 각각 작성하여 신
청서와 같이 시민홀로 이송
한다.

(3) 전호의 공사비 산출은 실지
시공하여야 할 급수장치를 정확
히 파악하여 산출한다.

(4) 시민 봉사실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 2 파트부터
이송된 서류중 통지서등을 신

청자에게 우송하고 신청서는 수납담당자에게 이송 보관토록 한다.

(5) 수납담당자는 공납금 및 공사비를 수납하면 급수공사비 납입통지서원표에 영수인을 날인하고 신청서에 수전번호를 부여하여 수도2과로 이송한다.

(6) 수전번호 부여는 수전번호 부여대장(서식제11호)를 시민홀에 과장1,2계 소관별 동별로 구분 비치하여 수납담당자가 수전번호를 부여한다.

다. 공사의 시행

(1) 수도2과장은 급수공사비를 납부한 신청서가 이송되면 공사시행 서류를 수도1과에 이송 계약 의뢰한다. 다만, 도급공사비 개별 건외 합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수의계약 시행할수 있다.

(2) 전호 단서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시행시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윤번제로 계약 시행한다.

(가) 대상 시공업자는 각구별 허가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 구는 통합구역으로 한다.

- 1. 종로구, 성북구
- 2. 중구, 동대문구
- 3.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 4. 성동구, 강남구

(나) 통합된 각구는 타구의 공사시행에 관계없이 통합 허가순위에 의거 시공업자를 선정한다.

(3) 운영규칙 제17조(1) 규정한 시공 구역은 경쟁입찰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4) 운영규칙 제21조(1)항은 수의계약대상 급수 공사에 이를 적용한다.

(5) 공사가 계약되면 착공계를 접수, 현장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을 동시에 지명하고 도급자에게 급수공사 시공명령서(별지서식제13호)를 발급하여 이에 의거 시공 및 감독한다.

(6) 전호의 급수공사 시공명령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합시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내역 (설계내역에는 급수관, 급수주, 양수기, 양수기보호통 및 관급자재에 대한 규격 및 수량)

(나) 공사설계도 (약도)

(다) 현장 종사 종업원

라. 준공

(1) 공사가 준공되면 도급자는 급수공사 시공명령서에 신청자의 준공확인인을 받고,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서 (별지서식 제 7 호) 를 첨부하여 공사완료 후 1 일 이내에 준공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서에 설계란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도 2 과장은 준공제를 접수하면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2 일 이내에 수도 1 과에 개진 통보하고 10 일 이내에 정산설계서를 작성하여 수도 1 과로 이송한다.

(4) 수도 1 과장은 재계약을 필요로 할시에는 재계약을 체결하

여 수도 2 과로 이송한다.

(5) 수도 2 과장은 재계약 서류가 이송되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수도 1 과로 이송한다.

(6) 수도 1 과장은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서에 의거 공사집행 잔액을 수요자에게 환불 조치하고 별도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서를 동별로 편철 보관한다.

" 4. 수탁공사의 설계 및 시행절차 " 문 " 4. 입찰대상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절차 " 로 하고 가.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찰대상 공사 및 D = 50 mm 이상의 배수 간선시설을 요하는 집단공사는 다음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대상 급수공사 시행 방법에 준한다.

(2) 집단공사는 주민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비 부담자 명세서 (별지서식 제 18 호) 및 소유자 명세서 (별지서식 제 19 호) 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전(1)호의 급수공사는 설계서를 작성하고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서에는 약도와 공종, 수량만을

기재하여 소정의 결제를 일은과
공사승인 및 납입통지 공문을
기안하여 동기 우송한다.

- 6. 시행상 준수 사항과 승인요청
가항(2)호중 "D=300mm"를
"D=500mm"로 하고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 항(3)호
를 삭제한다.
(6) 배관망도 및 급수공사 처리부
는 담당계장 책임하여 정비 보
관한다. "서식제 7 호"를 별거
와 같이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요령은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공업 운영규칙중 개정
규칙 (규칙제 1524) 시행일부터 지
용한다.
- 2. (경과조치) 이요령 시행당시대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
은 급수 공사는 중전의 요령에
의한다.

사 령

©1975.10.31

연 로 과 기한부공무원 조 순 영
(4 등 상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대문구 보건소 지방약무 박 영 회
지원보시보

75.10.20 자 발명 664 호를 동일
자료 취소함 (본인토거)

운수 2 과 서 기 관 김 구 현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1975.11.1

동대문구 건설관리국장 안 기 호
(지방서기관)
관광운수국 운수 2 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방역사무소 지상행정 윤 영 진
주 사

방역사무소 지방행정 최 승 석
주 사 보

방역사무소 지방행정 김 옥 섭
서 기 보

보건예방과 근무를 명함.

방역사무소 지방행정 조 성 환
서

여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방역사무소 지방보건 이 동 권
기 사

보건예방과 근무를 명함.

©1975.11.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김 영 성
강 남 구 시 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p>소년기술원·지방행정사무관 김중인 지방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 2호 외 규정에 외거 그직유 면함.</p> <p>◎ 1975.11.3</p> <p>서대문구 지방외무 보건소 기과 김병희 용산구 보건소장 직무대리에 포함.</p> <p>김영상 지방외무기정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보건소장에 포함.</p> <p>◎ 1975.11.4</p> <p>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 배문환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장에 포함.</p> <p>주택국(주택행정과장) 서기관 강정희 건설행정담당관 직무대리를 명함.</p> <p>건설행정부이사관 김상진 서울특별시 관광운수국장에 포함.</p> <p>시민회관 서기관 배문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p>관광운수국장 이사관 이상복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2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외거 그 직위물 해제함.</p> <p>시설관리과 지방대표원 천장희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 67 조 1호에 외거 파면함.</p> <p>시설관리과 지방대표원 노재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 67 조 1호에 외거 파면함.</p> <p>◎ 1975.11.5</p> <p>연료과장 서기관 한남영 주택행정과장에 포함.</p> <p>성북구(시민생활국장) 서기관 정덕상 연료과장에 포함.</p> <p>중구(건설관리국장) 지방서기관 인태명 성북구 시민생활국장에 포함.</p> <p>사회과 지방행정 구호계장 사무관 이상식 중구 건설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용산구 지방행정 총무과장 사무관 이창희</p>
--	--

동대문구 건설관리국장 직무
대리를 명함.

◎1975.11.7

속 산 물 지방수의 박 동 락
위생검사소 사 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이 진 혁
서기 보
경기도 전출을 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김 희 영
연구관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4 항에
의거 그직을 면함.

중기관리 지방기계 이 승 호
사업소 기사 보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 및 61 조
의 규정에 의거 그직을 면함.

관 악 구 지방행정 이 호 징
서기 보
지방행정서기에 추서함.
7호봉을 급함.

◎1975.11.10
중부병원 지방간호사 김 옥 주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도봉구보건소 지방간호 정 영 자
기사 보
강남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강남구보건소 지방간호 원 효 자
기 보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